■ 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0호의3서식] <신설 2019. 6. 12.>

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0일

제출인	① 상호(명칭)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성명(대표자)	
	④ 주소(사업장) (전화번호:)	
	⑤ 업종 [ ]파쇄재활용업 [ ] 파쇄잔재물재활용업 [ ] 폐가스류처리업	

보관폐기물의 처리 계획

(단위 : 톤)

⑥ 폐기물종류	⑦ 보관량	⑧ 처리계획			
		처리예정일	처리예정량	처리방법	
				자가/위탁	처리업체(위탁의 경우만 작성)

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: (서명 또는 인)

한국환경공단 귀하

작성방법

1. ① ~ ⑤란은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인의 인적사항 및 업체정보를 적습니다.
2. ⑥란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, 파쇄잔재물, 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3. ⑦란은 폐기물의 현재 보관량을 적습니다.
4. ⑧란은 보관폐기물의 처리예정일, 처리예정량을 적고, 처리방법에는 "자가"또는 "위탁"방법으로 적습니다. 단,"위탁"처리일 경우, 폐기물 처리업체명 및 사업자번호를 같이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계획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실태조사 (필요시)	→	수리 또는 반려

신청인 (제출인)

처 리 기 관 (한국환경공단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